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091호 2015. 06. 08.(월)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2015-8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 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2015-855호 인천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 17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7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7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80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81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8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83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7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 · 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3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77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77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 공고 ----- 56

3. 경제환경국장
4. 도시관리국장
5. 보건소장
6. 기획예산실장

④ 위촉직 위원은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위촉하며,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가 접수되었을 때 위촉하고, 해당 조례안의 처리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제3조제2호 본문 중 “지방의회의”를 “의회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를 “구청장이 의회”로, “조례 공포 안”을 “조례공포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을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제3조제5호 중 “기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및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의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장등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소관사무 등”을 “소관사무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특별히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심의보류”를 “심의보류, 재의요구”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안은 실·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장등”을 “보건소장·출장소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안등”을 각각 “조례안 등”으로, “각호”를 “각호”로, “조례안등과 필요한 자료(검토의견서·재의요구서·참고자료등)”를 “조례안 등과 필요한 자료(검토의견서·재의요구서·참고자료 등)”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안의결된 조례안 등은 제외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조례안등”을 “조례안 등”으로, “감사법무담당”을 “법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례안등을”을 “조례안 등을”로, “조례안등”을 각각 “조례안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10일전”을 “1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발의를 제외한 원안가결 조례공포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7항 중 “감사법무담당은 필요시”를 “법무담당은 필요 시”로, “심사완료 시”를 “심사완료 시”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감사법무담당”을 “법무담당”으로,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례안등”을 “조례안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전보고후”를 “사전보고 후”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간사등)”을 “(간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감사법무담당”을 “법무담당”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16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24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가운데 정렬)

인천광역시 서구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규칙, 훈령, 예규 서식도 이 서식을 사용(일반안건은 표지만 준용)
- ※ 제정의 경우 ○○안, 전부개정 경우 전부개정○○안, 폐지의 경우 폐지○○안으로 표시

16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제 출 자	○○○○실·장
제출년월일	년 월 일

16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기획예산실장 심사를 마침

18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의결주문 (15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인천광역시 서구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나.

3. 주요내용

가.

(안 제 조제 항)

나.

(안 제 조제 항)

4. 참고사항

가. 실·과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14point 신명조)

18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인천광역시 서구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포인트 신명조 -----↓

인천광역시 서구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4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24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실·과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실·국과별 의견수렴 결과			
협약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 방법 :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 방법 :			

24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p>관계법령</p>	<p><input type="checkbox"/> ○○○법</p> <p>○ 제○조(○○○○) -----</p> <p>○ 제○조(○○○○) -----</p> <p><input type="checkbox"/> ○○○법 시행령</p> <p>○ 제○조(○○○○) -----</p> <p>○ 제○조(○○○○) -----</p> <p>※ 관련 법령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p>
<p>관련법규 정비대상</p>	
<p>특이사항</p>	

24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5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국 △△ 과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계
세입	△△△△ △△△△						
	소계						
세출	△△△△ △△△△						
	소계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24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15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국 △△ 과장 ○○○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 규칙심의회 회의록

회의의 명칭	
개 최 부 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심의결과	
비 고	

[별지 제4호서식]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년 월 일

순번	의안 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비고

심의위원

서명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7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6. 0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경서로 67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6. 0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6-0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31-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 67 (경서동)	2009-09-22	경서지구를 관통하여 경서지구의 지명을 따 경서로로 명명	
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65-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32번길 18 (경서동, 예빛유치원)	2009-09-22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56-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32번길 3-12 (경서동)	2009-09-22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2-5, 62-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470-1 (오류동, (주)준도)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17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58-12 (원창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28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 146 (원창동)	2009-09-22	원창동과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 명명	
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62-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29-12 (경서동, 투제이빌딩)	2012-03-30	청라경관구조 계획에 의거 청라중심에 canal?? 이 있음을 부각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7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06. 0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새오개로35번길 7외 3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5-06-0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석남동 199-58	새오개로35번길 7	2015.06.05	건물 멸실	
2	인천 서구 원창동 381-6	중봉대로393번길 33	2015.06.05	건물 멸실	
3	인천 서구 원창동 381-4	중봉대로 375	2015.06.05	건물 멸실	
4	인천 서구 대곡동 243-4	대곡로 201-8	2015.06.05	건물 멸실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 - 80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8호, 2012.01.30)】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6. 0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29-14, 729-1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명칭】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331.00m ²	154.16m ²	591.98m ²	지하1층/지상3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하이플러스카드(주) 대표이사 옥선표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311호(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금곡동	729-14	대	209	209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	-	-	
2	금곡동	729-17	대	122	122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	-	-	
계				331	33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81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6.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심곡동 245-3번지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상업시설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연번	기 정					변 경 (안)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 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1	2-16	9,796.1	1	1,207.6		2-16	9,796.1	1	1,207.6	
			2	641.2				2	641.2	
			3	488.5				3	488.5	
			4	1,455.2				4	1,886.0	
			5	430.8						
			6	1,331.2				6	1,331.2	
			7-1	851.0	공동개발 (권장)			7-1	851.0	공동개발 (권장)
			7-2	1,000.7				7-2	1,000.7	
			8-1	390.0				8-1	390.0	
			8-2	749.5				8-2	749.5	
			9	1,250.4				9	1,250.4	

○ 상업시설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2-16	4, 5 → 4	획지합병	건축규모 확장(증축)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개재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8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6.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심곡동 325-6번지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광장
 - ① 광장 결정(폐지)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광장	근린광장	서구 심곡동 325-9번지 일원	4,204.5	감)4,204.5	-	2013.05.20	

② 광장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광장 (근린광장)	폐지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토지주 폐지 민원 해소

(2) 공공청사

①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	서곶우체국	우 체 국	서구 심곡동 325-7번지	-	증)485.4	485.4		연희1

②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서곶우체국	- 신설(환원)	- 광장폐지에 따른 환원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1-28	9,001.7	1	655.9		1-28	12,720.8	1	655.9	
		2	1,053	4-2획지와 공동개발(권장)	2		1,053	4-2획지와 공동개발(권장)	
		4-1	2,682.7	3필지로 대지분할(권장)	4-1		2,682.7	3필지로 대지분할(권장)	
		4-4	1,454.9	사회복지시설 1,722.4㎡	4-4		1,454.9	사회복지시설 1,722.4㎡	
		4-5	1.8	공동개발(권장)	4-5		1.8	공동개발(권장)	
		4-6	739.3	광장 1,468.3㎡	4-6		739.3	광장 1,468.3㎡	
		4-2	192.1	2획지와 공동개발(권장)	4-2		192.1	2획지와 공동개발(권장)	
		4-3	556.5		4-3		556.5		
					5		357.6	9획지와 공동개발(권장)	
					7		311.7		
					8		1,581.5		
					9		1,468.3	5획지와 공동개발(권장)	
		10-1	143.7	도로 137.7㎡ 공동개발 (권장)	10-1		143.7	도로 137.7㎡ 공동개발 (권장)	
		10-2	252.9		10-2		252.9		
		10-3	158.0	공동개발 (권장)	10-3		158.0	공동개발 (권장)	
		10-4	250.3		10-4		250.3		
10-5	169.2	공동개발 (권장)	10-5	169.2	공동개발 (권장)				
10-6	253.1		10-6	253.1					
10-7	186.3	공동개발 (권장)	10-7	186.3	공동개발 (권장)				
10-8	252.0		10-8	252.0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기정	1-28(1, 2, 4-1, 4-2, 4-3, 4-4, 4-5, 4-6,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28(1, 2, 4-1, 4-2, 4-3, 4-4, 4-5, 4-6,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단독주택용지 C용도)	용도	지정용도	-
				권장용도	-
				허용용도	•별표1의 C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C 불허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00%이하	
			높이	•4층이하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	
			형태	•별표2의 C	
			배치	•별표3의 C	
			색채	•별표4의 C	
건축선	-				
변경	1-28(1, 2, 4-1, 4-2, 4-3, 4-4, 4-5, 4-6, 5, 7, 8, 9,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28(1, 2, 4-1, 4-2, 4-3, 4-4, 4-5, 4-6, 5, 7, 8, 9,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단독주택용지 C용도)	용도	지정용도	-
				권장용도	-
				허용용도	•별표1의 C 권장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C 불허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00%이하	
			높이	•4층이하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	
			형태	•별표2의 C	
			배치	•별표3의 C	
			색채	•별표4의 C	
건축선	-				
신설	공공청사4	공공청사4 (공공청사 G용도)	용도	지정용도	•별표1의 G 지정용도
				권장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50%이하	
			용적율	•200%이하	
			높이	•4층이하	
			형태	•별표2의 G	
			배치	•별표3의 G	
			색채	•별표4의 G	
건축선	-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기타사항에 대한 계획(기정)>

도 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1-28(1, 2, 4-1, 4-2, 4-3, 4-4, 4-5, 4-6,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28(1, 2, 4-1, 4-2, 4-3, 4-4, 4-5, 4-6,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별표5 C의 차량동선, 주차시설,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간판 및 광고물	-

주) ()는 획지번호임

<기타사항에 대한 계획(변경)>

도 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1-28(1, 2, 4-1, 4-2, 4-3, 4-4, 4-5, 4-6, 5, 7, 8, 9,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28(1, 2, 4-1, 4-2, 4-3, 4-4, 4-5, 4-6, 5, 7, 8, 9,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별표5 C의 차량동선, 주차시설,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간판 및 광고물	-

주) ()는 획지번호임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표(기정)

구 분	A	B	C	D		
지 정 용 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		
권 장 용 도	-	-	-	-		
허 용 용 도	-	• 관련법규에 의하여 허용하는 건축물	• 관련법규에 의하여 허용하는 건축물	• 관련법규에 의하여 허용하는 건축물		
불 허 용 도	-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공장	• 근린생활시설 (단, 1층 및 2층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며, 3층이상은 기 허가된 건축물의 용도변경만 허용) • 판매 및 영업시설 • 전시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이외의 용도)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총포취급소이외의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이외의 용도) • 공공용시설(방송통신관련시설이외의 용도) • 관광휴게시설		
건 폐 율	30%이하	60%이하	60%이하	D1	D2	D3
				60%이하	60%이하	60%이하
용 적 륜	200%이하, 250%이하	200%이하	200%이하	500%이하	500%이하	500%이하
높 이	8~24층이하	5층이하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	4층이하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	15층 이하	10층 이하	7층 이하

구 분	E	F	G		H
지 정 용 도	• 주차장	• 학교	• 공공청사		• 사회복지시설
권 장 용 도	-	-	-		-
허 용 용 도	-	-	-		-
불 허 용 도	-	-	-		-
건 폐율	60%이하	30%이하	50%이하		60%이하
용 적률	250%이하	150%이하	200%이하		200%이하
높 이	5층이하	5층이하	공공 청사 1	공공 청사 3	4층이하
			13층 이하	4층 이하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표(변경)

구 분	A	B	C	D		
지 정 용 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		
권 장 용 도	-	-	-	-		
허 용 용 도	-	• 관련법규에 의하여 허용하는 건축물	• 관련법규에 의하여 허용하는 건축물	• 관련법규에 의하여 허용하는 건축물		
불 허 용 도	-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공장	• 근린생활시설 (단, 1층 및 2층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며, 3층이상은 기 허가된 건축물의 용도변경만 허용) • 판매 및 영업시설 • 전시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이외의 용도)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총포취급소이외의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이외의 용도) • 공공용시설(방송통신관련시설이외의 용도) • 관광휴게시설		
건 폐 율	30%이하	60%이하	60%이하	D1	D2	D3
				60%이하	60%이하	60%이하
용 적 륜	200%이하, 250%이하	200%이하	200%이하	500%이하	500%이하	500%이하
높 이	8~24층이하	5층이하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	4층이하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	15층 이하	10층 이하	7층 이하

구 분	E	F	G			H
지 정 용 도	• 주차장	• 학교	• 공공청사			• 사회복지시설
권 장 용 도	-	-	-			-
허 용 용 도	-	-	-			-
불 허 용 도	-	-	-			-
건 폐율	60%이하	30%이하	50%이하			60%이하
용 적률	250%이하	150%이하	200%이하			200%이하
높 이	5층이하	5층이하	공공 청사 1	공공 청사 3	공공 청사 4	4층이하
			13층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계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청시 제2015 - 83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6.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원창동 381-69, -70번지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없음)
 -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상업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Ⅲ-7	67,033.0	1	10,964.0		Ⅲ-7	67,030.5	1	10,964.0
		2	11,738.0				2	11,738.0
		3	6,416.0				3	15,367.5
		4	8,954.0					
		5	7,171.0				5	7,171.0
		6	7,121.0				6	7,121.0
		7	6,956.0				7	6,956.0
		8	7,713.0				8	7,713.0

※ 서구 원창동 381-69, -70번지에 대한 획지분할 측량 결과값 반영 및 획지 합병

■ 상업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Ⅲ-7	3, 4 → 4	면적변경 및 획지합병	- 획지분할 측량에 따른 결과값 반영 - 건축규모 확장을 위한 획지합병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5.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7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표준조례안 중 거점형 지역연대와 공동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사례를 적용하여 정비함.

2. 주요 개정내용

-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지역연대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7조, 제9조)
- 공동실무사례협의회 규정 신설(안 제13조 내지 제16조)
 - 제13조(공동실무사례협의회 구성)
 - 제14조(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 제15조(공동실무협의회의 회원)
 - 제16조(사무국)

3. 의견 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여성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732) 또는 Fax(560-274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보호”를 “안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위원장과 위원”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하되,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여성 보호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천광역시 서구청 아동·여성 보호 주무과장”

제9조제1항 중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소관 부서 국장에게 위원

장직을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7조2항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위원장”을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아동·여성 보호 담당과장”을 “아동·여성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공동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제14조(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공동실무사례협의회는 해당 지역연대 및 이에 협력하는 인근 지역연대 관할지역 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공동실무사례협의회 회원)

① 제7조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여성아동 보호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간사, 전문가를 공동실무사례협의회원으로 한다.

② 공동실무사례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제16조 (사무국)

① 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과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전담인력은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보호 전문가로 임용한다.

③ 사무국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기초지역연대 일반관리사무
 2. 공동실무사례협의회 운영지원
 3. 인근 기초지역연대 지원 및 연락
- ④ 사무국의 운영은 지역연대 참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연 2회”를 “연 1회”로 한다.

제23조제4호 중 “사례관리팀”를 “실무사례협의회”로 한다.

제25조 중 “사례관리팀”를 “실무사례협의회”로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례관리팀”은 “실무사례협의회”로 하고, “사례관리팀장”은 “실무사례협의회장”으로 한다.

제29조 중 “사례관리팀원”은 “실무사례협의회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러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아동·여성 보호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호~11호(생략)

<신설>

③~④ (생략)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장) 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신설>

②위원장은 구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①(생략)

② 간사는 아동·여성 보호 담당과장

-----한다.

1호~11호(현행과 같음)

12. 인천광역시 서구청 아동·여성 보호 주무과장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소관 부서 국장에게 위원장직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 -----
-----.

④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

-----.

⑤-----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
-----.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①(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아동·여성정책업무 담당팀

으로 한다.

③(생략)

제13조(소위원회)①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안유형별 또는 특정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사례관리팀 관련업무를 담당할 소위원회는 구성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 중 해당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제14조(사례관리팀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둔다.

제15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장으로 한다.

③(현행과 같음)

제13조(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공동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제14조(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공동실무사례협의회는 해당 지역연대 및 이에 협력하는 인근 지역연대 관할지역 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공동실무사례협의회 회원) ① 제7조 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여성아동 보호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간사, 전문가를 공동실무사례협의회원으로 한다.

② 공동실무사례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제16조(사례관리팀 팀원) ① 제7조제 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여성아동 보호 및 복지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간사 내지 전문가를 사례관리팀원으로 한다.

② 사례관리팀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정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생략)

제23조(운영위원회 회의안건)(생략) 1호~3호 (생략)

4. 사례관리팀에서 제안한 안건

제25조(사례관리팀 회의운영) 사례관리팀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6조(회의기록과 보고) ①(생략)

② 사례관리팀 회의는 사례관리팀장

제16조 (사무국) ① 공동실무사례협의회 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과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전담인력은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보호 전문가로 임용한다.

③ 사무국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기초지역연대 일반관리사무
- 2. 공동실무사례협의회 운영지원
- 3. 인근 기초지역연대 지원 및 연락

④ 사무국의 운영은 지역연대 참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정기회의) ①-----연 1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운영위원회 회의안건)(현행과 같음) 1호~3호 (현행과 같음)

4. 실무사례협의회-----

제25조(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 실무사례협의회 -----

제26조(회의기록과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사례협의회---사례협의회

이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한다.

③ 사례관리팀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④~⑤ (생략)

제29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구청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사례관리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

③ 실무사례협의회장-----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

-----실무사례협의회원에게-----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77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적정 예산 범위내 집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장려수당 지급대상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해당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보장시설
- 지급기준
 - 현재 근무하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상용으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 장려수당 지급상한 : 시설장 만65세, 종사자 만60세

3. 의견 제출

-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2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여성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721) 또는 Fax(560-274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 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개 정 이 유	○ 우리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적정 예산 범위내 집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p>○ 장려수당 지급대상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해당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시설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보장시설 <p>※ 시설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만원 지급</p> <p>○ 지급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근무하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상용으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 장려수당 지급상한 : 시설장 만65세, 종사자는 만60세
개 정 안	“별지 참조”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관계 법령 발췌	“별지 참조”
관련 사업 계획	“해당 없음”
예산 수 반 사항	“해당 없음”
기타 참고 사항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별표1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시설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보장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종사자의 임면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시설별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임면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종사자 장려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매월 1일 기준 현재, 근무하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상용으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2. 장려수당 지급상한은 시설장 만 65세, 종사자는 만 60세까지로 한다.

제4조(교부신청) 종사자 장려수당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종사자 장려수당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시설에서 매월 급여지급 시 종사자 장려수당을 지급한다.

② 종사자의 임용 및 퇴직 등으로 인하여 지급 월에 신분상 변동이 있을 경우 종사자 장려수당은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장려수당의 환수) 구청장은 장려수당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수당을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수당을 받은 경우
2. 제3조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7조(적용범위) 장려수당 지급에 관하여 그 밖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별히 정한 다른 법령, 지침 등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 지침 등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사자 장려수당을 지급받는 종사자 중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장려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사자 장려수당의 지급대상자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 업 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
2.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월정 수당지급
3. 교부신청금액 및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종사자장려수당	산출내역	비고
()월 청구액		①-②	
금월소요액(①)			
전월잔액(②)			퇴직자 반납액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설명 (직인)

소재지

대표자 (인)

예금계좌번호 (○○은행)

※ 첨부서류 :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1부.

관계법령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여야 함.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단,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77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08호(2011.08.2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 중로2-166호선,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2-166호선)사업(미개설구간)】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6. 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3-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2-166호선)
 -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2-166호선)사업(미개설구간)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B=15m, L=14m, A=207m²(금회 사업구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비고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도로	중로	2	166	15	15	285	271	14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학교법인 봉선학원 이사장 이재욱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정로33(십정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08.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당하동	942-6	전	67	1	한국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	-	
2	당하동	943-19	구	112	102	한국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	-	
3	당하동	943-6	잡	52	52	한국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	-	
4	당하동	943-10	답	436	24	김한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15-31	-	-	-	
5	당하동	산214-1	임	15,195	28	이대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40-15 제일아파트2동 909호	-	-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6번 참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3번 참조

9.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